제1769호

2020. 7. 23.(목)

발 행 인 : 영 등 포 구 청 장
편 집 인 : 홍 보 미 디 어 과 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전 화 : 02-2670-7561

영등포구보

규 칙

· 제78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 1

입법예고

· 제2020-124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
· 제2020-124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6

고 시

· 제2020-14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 9
· 제2020-146호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고시 ····· 11
· 제2020-147호 영등포로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 13
· 제2020-148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 16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영등포구홈페이지<http://www.ydp.go.kr(영등포소식→새소식→영등포구보)>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및 편집문의 (☎ 02-2670-7561 / 전송: 02-2670-3581)
◎ 구보발행일은 매주 목요일 (공휴일인 경우 익일 발행, 공포 등 필요시 발행일 조정 가능)
◎ 구보게재접수는 D-3일(월요일)까지 접수

D-3접수 → D-2일 편집 및 교정 → D-1일 인쇄 및 제책 → D일 보급 및 배포

영등포구

영등포구 발간등록번호
3180244-0064-2020

규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채 현 일 ㊞
2020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78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을 “정한 것을” 으로 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중 “담배 소매인” 을 “담배소매인” 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받고자하는” 을 “받으려는” 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7조에 따라” 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14조제3항에 따라” 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공고한다.
제5조제2항 중 “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하며” 를 “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 에서 말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하며” 로 하고, “소매인 영업소간의” 를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소매인 영업소 간의” 로 하며, 단서 “제5호 및 제6호의 점포” 를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의”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대규모 점포” 를 “대규모점포” 로,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물의 건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를 “건축물” 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제2항의 경우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를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그” 로 “동일 시설물” 을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로, “지정 할 수” 를 “지정할 수” 로 한다.

제6조 중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의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

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란" 을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장소." 을 "장소" 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제57조에 의거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등을" 를 "제5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설치하여야하며" 를 "설치하여야 하며" 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 을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특정" 을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특정" 으로 "외벽사이를" 을 "외벽 사이를" 로, "감안하여" 를 "고려하여" 로 "지상2층" 을 "지상 2층"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0조 제2항의 규정을" 를 "제10조제2항을" 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영업소간" 을 "영업소 간" 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240호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재)영등포문화재단의 사업에 문화예술시설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조항을 명시하여 우리구 문화예술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문화예술진흥에 앞장서고자 함

2. 주요 내용

○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신설 (안 제4조제1항제6호)
○ 법률 위임 근거 없는 ‘공유재산 무상 사용’ 조항 삭제 (안 제16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영등포구청, 당산동3가), 전화 02)2670-3134, FAX 02)2670-359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의견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문화예술시설의 운영 및 관리
6. (생 략)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생 략)	제16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0-1248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개정 이유

융자 상환기간의 예외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융자 상환기간 예외조건 단서조항 신설(안 제6조 제3항)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참조: 일자리경제과장,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 영등포구청, 전화: 2670-3426, 이메일: ay0104@ydp.go.kr, 팩스: 2670-36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한 의견사항

※규칙의 입법안은 영등포구 홈페이지(http://www.ydp.go.kr) '입법예고'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기금의 융자한도액 및 상환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융자한도액 및 상환조건)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상환기간 :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단서 신설>	3. ----------.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금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고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41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지정 취지

쾌적한 지역 환경을 위해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 이상)이 속한 대지의 일부와 그 주변 보행로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지 정 일: 2020년 7월 23일

3. 지정장소 및 범위 (별첨1 참조)

연 번	건 물 명	주 소	규 모
1	문래 현대홈씨티1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1길 5	21,6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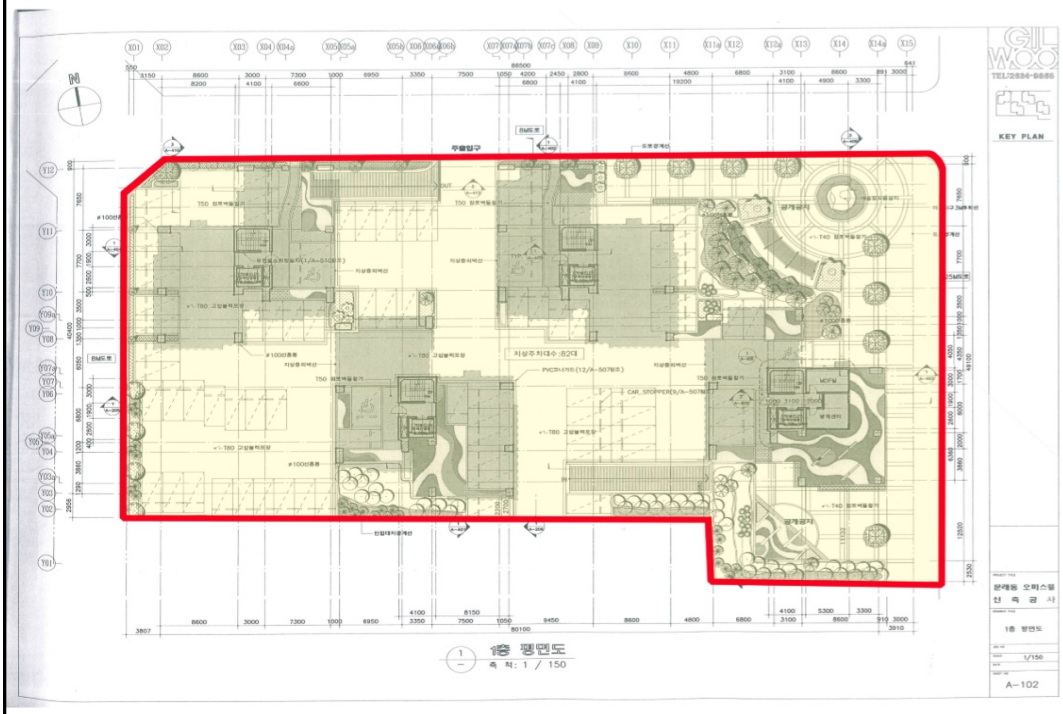
4.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부과

○ 금연 계도기간: 금연구역 지정일로부터 2020. 09. 30.까지
○ 과태료 부과일: 2020. 10. 01.부터
-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보건소 보건지원과(☎2670-4895)로 문의바랍니다.

[별첨 1]

건물명	주 소	연면적	소유자	신청일
문래 현대홈씨티1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 11길 5	21,673㎡	213명	2020. 6. 1.



[금연구역지정 요청구역 도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46호

지적기준점 측량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측량성과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측량성과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좌표계 원 점	평면직각 좌 표 (Xm)	평면직각 좌 표 (Ym)	위 도	경 도	타원체고 표고	표지 재질	토지소재지
지 적 도근점	9538	세계중부	543941.32	191916.16	37-29-41.61745	126-54-30.91098	41.18	철제	대림동 912-19번지
		지역중부	443635.40	191845.39					
지 적 도근점	9539	세계중부	543882.28	191933.91	37-29-39.70300	126-54-31.63574	41.94	철제	대림동 918-47번지
		지역중부	443576.36	191863.14					
지 적 도근점	9540	세계중부	543718.66	191815.11	37-29-34.39189	126-54-26.80619	43.67	철제	대림동 942-23 앞 사거리
		지역중부	443412.75	191744.34					
지 적 도근점	9541	세계중부	543605.33	191725.53	37-29-30.71311	126-54-23.16409	37.05	철제	대림동 967-15번지
		지역중부	443299.43	191654.76					
지 적 도근점	9542	세계중부	543593.90	191381.48	37-29-30.33117	126-54-09.15900	34.60	철제	대림동 929-10번지
		지역중부	443288.01	191310.72					
지 적 도근점	9543	세계중부	543788.39	191554.75	37-29-36.64520	126-54-16.20467	37.81	철제	대림동 861-21 앞 사거리
		지역중부	443482.48	191484.00					
지 적 도근점	9544	세계중부	543765.33	191840.28				철제	대림동 944-10번지
		지역중부	443459.42	191769.51					
지 적 도근점	9545	세계중부	543794.09	191804.71				철제	대림동 1127번지 113동 옆
		지역중부	443488.17	191733.94					
지 적 도근점	9546	세계중부	543835.42	191815.89				철제	대림동 1127번지 111동 앞
		지역중부	443529.50	191745.12					
지 적 도근점	9547	세계중부	543841.59	191862.15				철제	대림동 1127번지 어린이집 뒤
		지역중부	443535.67	191791.38					
지 적 도근점	9548	세계중부	543855.68	191870.49				철제	대림동 919-2번지
		지역중부	443549.76	191799.72					
지 적 도근점	9549	세계중부	543875.66	191865.45				철제	대림동 919-2번지
		지역중부	443569.74	191794.68					

기준점 명 칭	기준점 번 호	좌표계 원 점	평면직각 좌 표 (Xm)	평면직각 좌 표 (Ym)	위 도	경 도	타원체고 표고	표지 재질	토지소재지
지 적 도근점	9550	세계중부	543886.34	191892.99				철제	대림동 1127-6번지
		지역중부	443580.42	191822.22					
지 적 도근점	9551	세계중부	543870.31	191897.87				철제	대림동 1129번지
		지역중부	443564.39	191827.10					
지 적 도근점	9552	세계중부	543973.01	191909.41				철제	신길동 4941번지
		지역중부	443667.09	191838.64					
지 적 도근점	9553	세계중부	543948.80	191831.17				철제	대림동 1127-4번지
		지역중부	443642.88	191760.41					
지 적 도근점	9554	세계중부	543908.53	191839.22				철제	대림동 1127번지 동쪽 출입구앞
		지역중부	443602.61	191768.46					
지 적 도근점	9555	세계중부	543916.40	191812.90				철제	대림동 1127번지 106동 옆
		지역중부	443610.48	191742.14					
지 적 도근점	9556	세계중부	543890.34	191794.52				철제	대림동 1127번지 107동 놀이터 옆
		지역중부	443584.42	191723.76					
지 적 도근점	9557	세계중부	543831.72	191742.82				철제	대림동 1127번지 108동 옆
		지역중부	443525.82	191672.05					
지 적 도근점	9558	세계중부	543777.46	191694.06				철제	대림동 1127-7번지
		지역중부	443471.57	191623.29					
지 적 도근점	9559	세계중부	543740.71	191752.53				철제	대림동 942-30번지 앞
		지역중부	443434.81	191681.76					
지 적 도근점	9560	세계중부	543809.68	191583.57				철제	대림동 929-10번지
		지역중부	443503.77	191512.82					
지 적 도근점	9561	세계중부	543903.45	191649.20				철제	대림동 894-75번지 앞
		지역중부	443597.56	191578.45					
지 적 도근점	9562	세계중부	543950.94	191709.74				철제	대림동 898-5번지 건너편
		지역중부	443645.04	191638.98					
지 적 도근점	9563	세계중부	543994.37	191751.57				철재	대림동 903-50번지 건너편
		지역중부	443688.47	191680.81					
지 적 도근점	9564	세계중부	543981.28	191774.18				철제	대림동 1127-1번지
		지역중부	443675.37	191703.42					
지 적 도근점	9565	세계중부	544008.99	191804.08				철제	대림동 1127-1번지
		지역중부	443703.08	191733.32					
지 적 도근점	9566	세계중부	544055.26	191891.81				철제	대림동 912-3번지
		지역중부	443749.34	191821.04					

기준원점명	중부원점(세계 및 지역측지계)
설치·측량일	2020년 6월 9일/ 2020년 7월 6일
측량성과보관장소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47호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물등의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시범구역 내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완화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영등포로 에너지절약형 LED간판개선사업 옥외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노후·위험간판이 다수 설치된 영등포로(영등포시장 사거리~영등포로터리)지역을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광고물의 규격, 수량, 크기, 종류 등의 표시방법을 제한·완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품격 있는 도시경관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 「영등포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정비시범구역의 지정) 정비시범구역은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지정구역	사업규모	위치도
○ 영등포시장 사거리 ~ 영등포로터리 양방향 약 1.2㎞ 구간으로 정비 시범구역 도로 양쪽에 접한 모든 건물, 점포 - 영등포로 216-1 ~ 영등포로 270 - 영등포로 225 ~ 영등포로 53길 1	- 건물동수 58개소 - 업 소 수 280개소 - 개선대상 150개소	※하단 참조



제4조(사업추진방향 및 사업예산)

① 사업지구 내 주민자율협정제 추진

가. 간판개선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주민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 내 건물주, 점포주 및 관련단체 구성원 등으로 「영등포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나. 영등포로 간판개선주민위원회와 영등포구청 간 사업추진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② 사업예산: 약 375,000천원(시비+구비): 간판 디자인·철거·제작·설치 및 건물 외관 청소, 마감비 포함

가. 1점포 당 1개 간판 최대 2,500천원 범위 내 지원
(지원금 외 추가비용은 점포주 부담)

나. 예산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점포수는 추후 변경할 수 있음

제5조(광고물 등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①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1개를 원칙으로 하며 설치가 허용되는 광고물의 종류는 벽면이용간판에 한 한다
다만, 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에 대하여는 하나의 벽면이용간판을 추가로 표시·설치할 수 있다.(이 경우 추가되는 간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비부담 원칙)
벽면이용간판은 건물의 5층 이하에 설치하되 1~3층은 판류형 또는 입체형으로, 4~5층은 입체형으로 설치한다

② 돌출간판의 신규설치 및 연장허가는 불가하나(기존 허가 간판은 표시기간 종료까지 존치 가능) 1면의 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 두께 20센티미터 이하인 소형돌출간판과 하나의 업소 당 표시면적이 0.36제곱미터 이하인 연립형간판(2개 이상의 업소를 하나의 간판에 표시)은 업소당 1개 설치 가능하며 간판의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4층 이상 건물의 가장 높은 층(최대 3면)에 부착하는 벽면이용간판(건물명 표시)역시 총 수량에서 제외된다.

④ 옥상간판의 표시방법은 심의를 거쳐 본 고시의 규정을 따라 설치하며 역시 총 수량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모든 광고물, 게시시설 이를 지지하는 구조물은 구조적, 전기적으로 안전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광고물의 재질은 유연성 원단(플렉스 등) 사용을 지양하고, 업소의 특성과 건축물 및 주변환경에 어울리는 다양한 재료사용을 권장한다.
⑥ 광고물에 조명을 설치할 경우는 LED 소재의 간접조명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적용의 특례)
① 건물의 특성, 지역여건 상 이 고시의 표시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합하고, 도시경관과 생활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등포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에서 인정받는 경우에는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 광고 기술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고품격화 또는 도시경관에 기여하는 경우 첨단기술을 사용한 광고물 등의 표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표시하게 할 수 있다.
③ 다양하고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하여 디자인 특성 상 간판의 일부에 특별한 소재와 규격의 제품(파사드, 오브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설치할 수 있다.
④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구청장이 정비시범구역 내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 등은 이 고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만료일까지 표시할 수 있다.
제3조(기타사항) ①이 고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영,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정비시범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완화에 관한 고시는 이 고시로 갈음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20-148호

도로명주소 부여,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23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도로명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2 (양평동2가) 외 9건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부동산정보과(☎2670-3724)에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 도로명주소 부여 조서

고시일 : 2020.7.23.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155-23, 154-22, 154-23, 155-9, 155-22, 155-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56길 7 (신길동)	2020-07-23	2010-05-27	도신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신규 부여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28-1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3길 7 (영등포동2가)	2020-07-23	2010-05-27	버드나루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신규 부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494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28길 43 (신길동)	2020-07-23	2010-05-27	신길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신규 부여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동1가 15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39길 14 (당산동1가)	2020-07-23	2010-05-27	영신로에서 분기되는 도로로 해당 일련번호 활용	신규 부여

■ 도로명주소 폐지 조서

폐지고시일 : 2020.7.23.

연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고시일	비고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9길 4-4 (대림동)	2020-07-20	2020-07-23	대장 말소
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2-1 (양평동2가)	2020-07-20	2020-07-23	대장 말소
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22 (양평동2가)	2020-07-20	2020-07-23	대장 말소
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21길 11 (신길동)	2020-07-20	2020-07-23	대장 말소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9길 8 (대림동)	2020-07-20	2020-07-23	대장 말소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9길 6-1 (대림동)	2020-07-20	2020-07-23	대장 말소